성주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나. 기본원칙, 당사자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5조)
다.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, 지원, 위원회 운영(안 제6조 ~ 제18조)
라. 지도감독, 표창(안 제19조 ~ 제2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사회적 기업 육성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[2017. 10. 16. ~ 11. 5]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에 한정된 지원근거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제정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력 및 지원방안 마련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,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, 재정, 시설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
-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및 지도·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사회적기업 육성법률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